



재정경제부

# 보도자료

- 풍요로운 나라  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  
신뢰받는 재경부

**보도일시 2007.12.27(목) 15:00**

생 산 일	2007년 12월 26일(수)	생산부서	금융정책국 중소기업금융과
담당과장	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 (T:2150-9650)	담당자	박민우 서기관 (T:2150-9651)

## 제 목 :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

「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」이 '07.12.27(목)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음

-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\*을 지원하는 재단으로

\* 저소득층 창업·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,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,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·유지 지원 등

- 지난 8.3일 공포된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('08.2.4일 시행)

동 시행령안은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① (저소득층 복지사업 범위)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범위에 저소득층의 교육·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포함시킴
- ② (복지사업자의 자격) 복지사업자의 자격을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·단체\*로 정함

\* 금융기관, 공익법인, 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, 기타 이에 준하는 법인·단체

③ (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방법)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복지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\*를 규정하고,

\* 사업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,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, 그 밖에 재단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

- 교부된 지원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재단이 복지사업자의 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④ (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방법) 금융기관이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

-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그 사실을 문서\*로 통지하도록 함 (단, 통지가 반송되거나 기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이상 공시)

\* 우편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(이메일) 활용

□ 시행령 제정과 별도로 정부는 내년 1/4분기 휴면예금관리 재단 설립을 목표로 관련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

○ 지난 9월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 및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이체·출연 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중

○ 12월~'08년 1월까지 30만원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\*하고

\* 지난 12.12일부터 휴면보험금을 은행권 활동계좌로 이체하기 시작 ('08.1월부터는 은행권내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 개시 예정)

○ '08.2월말까지 금융기관의 재단에 대한 출연 금액·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 (설립위원회와 금융기관간 MOU체결)

※ 별첨 :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안 조문별 내용

재정경제부 대변인

< 별첨 >

**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안  
조문별 내용**

2007. 12.

**재 정 경 제 부  
금 융 정 책 국**

# 1

## 금융기관 (제2조)

### □ 조문

제2조(금융기관)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를 말한다

#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범위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를 추가

### □ 입법효과 등

- 산림조합도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

\* 「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및 「금융실명거래법」 등의 경우에도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정의에 농협과 수협만 언급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를 추가

# 2

##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 (제3조)

### □ 조문

제3조(저소득층 복지사업 등)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
2.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
3.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휴면예금관리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단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범위에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·의료비 신용대출사업, 기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

## □ 입법효과 등

- 다양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

## **3** 복지사업자의 자격 (제4조)

## □ 조문

**제4조(복지사업자의 자격)** 법 제2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”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
2. 「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3. 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자의 자격을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·단체로 정함

- 법령상 규정된 사업내용 (마이크로크레딧, 마이크로인슈런스, 신용회복 지원 등)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·단체의 형태를 열거

\* 금융기관, 공익법인, 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등

## □ 입법효과 등

- 사업내용에 따라 재단이 구체적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별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, 무분별한 지원 남용을 방지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

## 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(제5조)

### □ 조문

**제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** ① 재단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재단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
2. 그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3.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의 제출 시기·방법 등을 규정
- 사업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, 결산서는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집행실적 대비표, 대차대조표, 회계법인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

## □ 입법효과 등

- 재단이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관리·감독 효율성 제고

## **5**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[제6조]

### □ 조문

제6조(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) 법 제21조제2항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금융기관명, 금융기관 연락처, 휴면계좌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,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.

#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 “금융기관명, 연락처, 휴면계좌번호 또는 가입증서번호, 소멸시효 완성일” 등을 재단에 제출하도록 함

## □ 입법효과 등

- 법률에 기 규정된 원권리자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휴면예금액 외에 금융기관명, 연락처, 계좌번호 등을 재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권리자의 환급 요청시 재단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## 6 복지사업자의 지원금 신청 (제7조)

### □ 조문

제7조(복지사업자의 지원금 신청) 법 제24조에 따라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복지사업자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
2.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
3. 그 밖에 재단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#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

### □ 입법효과 등

-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복지사업자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,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, 기타 재단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지원여부 판단 효율성을 제고

**7****복지사업자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(제8조)** **조문**

제8조(복지사업자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) ① 복지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단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30일 이전에 복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**제정이유**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는 시기·방법 등을 규정함

 **입법효과 등**

- 복지사업자에 대한 재단의 관리·감독 효율성을 제고

**8****지원금의 감독 등 (제9조)** **조문**

제9조(지원금의 감독 등) ① 재단의 이사장은 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복지사업자가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복지사업자의 자료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.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이 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## □ 입법효과 등

- 복지사업자에 대한 재단의 관리·감독 효율성을 제고

## **9** 휴면에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(제10조)

## □ 조문

**제10조(휴면에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)** 재단은 법 제27조에 따라 휴면에금 원권리자가 재단,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·단체를 통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
2. 「보험업법」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
3. 「보험업법」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
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합금융협회
6.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·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함
- 「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소속협회 등을 열거

## □ 입법효과 등

- 원권리자가 재단 또는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휴면예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권리자 보호 강화

# 10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[제11조]

## □ 조문

제11조(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) ① 법 제28조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30만원을 말한다.

② 금융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, 우편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기관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제10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·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대상과 방법을 규정
  - (통지대상) 「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과 동일하게 통지대상 기준을 “30만원”으로 정함
  - (통지방법) 출연에 관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원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, 우편·팩스·정보통신망·홈페이지 공시 등으로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통지 부담을 완화하고 재단에 대한 자발적인 출연 가능성을 제고
- \* 당초 입법예고안에 규정된 도달시기 간주문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삭제

## □ 입법효과 등

- 원권리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통지 편의성의 조화 도모

## 11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 (제12조)

### □ 조문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 ①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
## □ 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함

## □ 입법효과 등

- 위반사실의 서면 통지, 의견진술 기회 부여, 과태료 금액 결정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

\* 「금융실명거래법 및 동 시행령」도 동일하게 규정